

17~18세기 왜관의 연료 소비 양상과 연료 지급 방법

여민주*

| 목 차 |

- I. 머리말
- II. 수요별 연료 소비 양상
 - 1. 난방·취사용
 - 2. 수공업용
- III. 조선으로부터 연료 지급 방법
 - 1. 지급 대상
 - 2. 지급 방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조선의 관점에서 왜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소비 형태와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왜관에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왜관에 거처하는 동안 일상생활을 위해서 연료가 필요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땔나무와 숯이 사용되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수공업용으로도 연료가 사용되었는데, 조선은 이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pomqoms@gmail.com

를 우호적으로 지급하고자 했다.

조선이 왜관에 연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611년부터이며, 송사부터 관수왜, 별차왜까지 연료를 지급했다. 왜관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직책이 늘어나는 만큼 조선은 연료를 지급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료를 지급받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연료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연료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연료로 사용하는 땔나무와 숯은 봉산과 시탄가포를 통해 마련했다. 조선은 부산진에 양산 내포와 화제리에 탄봉산을 절급하였고, 여기서 숯을 마련해서 왜관까지 운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땔나무는 절영도에서 마련하였다. 시탄가포를 통해 시탄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경상 좌·우도의 각 진에서 시탄을 마련해서 부산진에 수납하고, 부산진이 왜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탄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시탄가포를 부산진에 지급하여 구매해서 지급하였다.

왜관에 연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왜관과 조선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연료 지급날짜 지키지 않자 난출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은 계속해서 왜관의 시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추가·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는 왜관에 거처하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시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왜관, 시탄, 『왜인지급시탄절목』, 시탄가포, 봉산

I. 머리말

왜관이라는 공간은 조선에 있지만, 조선인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조선으로 온 일본인들이 거처했던 공간이었다. 왜관의 서관(西館)에는 왜사(倭使)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있었으며, 동관(東館)에는 관수(館守)가 거처하던 관수가(館守家) 등이 있었다. 또한 주방·소주가 등 음식을 판매하거나, 다다미방과 같은 상점가도 형성되어 있었으며, 도자기를 굽는 가마인 왜관요(倭館窯)도 있었다. 왜관에서 거처하고 있는 일

본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나 전기가 발견되고 발명되기 전에는 땔나무와 숯이 주 연료로 사용되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도자기·기와·소금을 만들 때에도 연료가 필요했다. 이러한 연료들은 자급자족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왜관에 거처하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연료를 구했을까? 1683년 <계해약조>에서 왜관 밖으로 무단으로 나갈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정해지면서 일본인들은 왜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왜관 안에서 땔나무나 숯을 구해서 사용해야했지만, 정해진 공간 안에서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연료 대부분을 조선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는 왜관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급 규정이 변화되고, 연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왜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후기 왜관의 연료에 대한 연구성과는 연료 지급을 둘러싸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¹⁾과, 『邊例集要』와 『왜인지급시탄절목』을 통해 1인당 땔감 소비량과 산림 면적을 추정한 연구²⁾가 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언급한 수준이며, 일부 사례에 그친다. 최근에 왜관에서의 연료와 관계된 연구가 발표되었다. 1609년부터 1876년까지의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에 대해 밝혀졌다.³⁾ 이 연구는 왜관의 연료 문제에 대한 최초의 독립된 연구라

1) 장순준, 「조선후기 倭館에서 발생한 朝日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2008.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 김동진, 「15-19세기 한반도 산림의 민간 개방과 숲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3, 2017.

3) 정성일,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1609~1876)」,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수공업에 관해서는 왜관요의 운영과 함께 주된 연료로 사용된 땔감의 수급과 이동에 관해 고찰한 연구⁴⁾가 있는데, 왜관요에서 사용하는 수공업용 땔감을 구청(求請)해서 사용했으며, 주로 부산 인근 지역에서 수급하였고, 왜관 근처 시탄고(柴炭庫)에서 땔감을 공급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왜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거나, 왜관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있으며, 연료를 지급하는 조선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왜관의 일본인들에게 연료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도 같이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7~18세기의 왜관의 연료 지급에 대해서 조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왜관에서의 수요별 연료 소비 형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왜관은 조선에 있지만, 주로 일본인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선의 생활과 차이가 있으므로, 어떻게 연료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료에 대해 어떠한 지급 규정이 있었고, 어떻게 연료를 조달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성과와 함께 조선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왜관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수요별 연료 소비 양상

1. 난방 · 취사용

임진왜란 이전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왜관에 상주하는 역원이

4)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 수급」, 『향도부산』 39, 2020.

없었다. 하지만 무역량이 차츰 증대하고, 사무가 번잡해짐에 따라 왜관에는 대마번에서 대관(館官)이라고 불리는 관리가 상주하게 되었고, 다른 상주 인원들도 늘어났다.⁵⁾ 왜관에 어느 정도 일본인이 거주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표인영래등록』에는 1696년의 경우 왜관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유관왜인’으로 표현하면서 그 숫자를 609명(5월 15일), 592명(6월 19일), 497명(7월 14일) 등으로 적고 있어 약 400~600명 정도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⁶⁾ 이들이 왜관에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연료가 필수적이었다.

왜관은 일본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일본식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조선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조선의 주거 양식과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주로 마루방이나 온돌을 사용했으며, 이후 온돌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반민까지도 온돌을 사용했다. 하지만 왜관은 일본인들의 공간이었으므로, 온돌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다다미[畳]가 설치되었다.⁷⁾ 왜관이 온돌이 아닌 다다미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변박이 그린 <왜관도>(1783)에 다다미를 파는 다다미 가게[簾席家]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다미를 사용하는 일본인들은 겨울에는 화로를 이용하여 난방을 했는데,⁸⁾ 주로 숯을 이용하여 화로에 불을 피웠다. 조선에서도 온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루방에서는 화로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무관이었던 노상추는 왜관을 방문했을 때 통사에게 관수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관에는 온돌 대신 바닥에 두세 개 두께의 돛자리를 깔았으며, 겨울에 잠을 자더라도 각각 이불 4~5채를 갖추어야 따뜻하다고 하였다.⁹⁾ 즉 왜

5) 김강일, 『闢出, 조선의 고민과 그 대책』, 『전북사학』 36, 2010, 33쪽.

6)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엮음, 『왜관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20, 342쪽. 정성일, 앞의 논문, 201쪽.

7) 『備邊司謄錄』 영조 10년 7월 5일.

8) 『邊例集要』 권10, <柴炭> 辛卯 四月.

9) 국역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1-3, 1782년 4월 11일.

관에서는 겨울철 추위를 당하면 온돌이 없었기 때문에 화로를 사용해야 했으며¹⁰⁾, 왜관에서 난방용으로 연료를 사용했다.

난방용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연료가 필요했다. 왜관은 사신들이 통상을 하는 공간이다. 송사(送使)가 가져온 진상 물품을 바치고 난 뒤에 왜관에서 연향(宴享)을 열었는데, 왜관에서 치르는 연향만 하더라도 1년에 60여 차례에 이르며,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오는 차왜의 연향까지 더하면 1년에 70~80여 회에 이르는 연향을 왜관에서 담당했다.¹¹⁾ 다례 및 연향 음식은 식재료 및 음식을 만드는 숙수(熟手) 등이 모두 조선에서 충당되었다.¹²⁾ 이들이 왜관에서 연향 음식을 조리를 위해서 연료가 필요했다.

연향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을 만들 때도 연료가 필요했다.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지급한 재료를 받아서 일본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조선에서 음식재료를 지급하면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재료로 식사를 해결했다.¹³⁾ 1784년 9월 왜관의 연료 담당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내용에는 “① 일특송 정관의 식자(食者) ② 2순 표차사 정관의 식자” 등 식자들이 등장하는데, ‘식자’란 일본 사신들이 왜관에 체류할 때 ‘밥 짓는 일’을 맡았던 일본인을 조선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¹⁴⁾ 식자의 존재를 통해 왜관에서 음식을 조리 했으며, 이를 통해 왜관에서 연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일상¹⁵⁾이었는데, 차를 끓이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했다.

10) 『承政院日記』 783책, 영조 10년 7월 4일; 주 7)과 동일.

11)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2008, 96쪽.

12) 심민정, 위의 논문, 2008, 95쪽.

13) 주 12)와 동일.

14) 『館守日記』 天明 4년(1784) 9월 14일. 정성일, 앞의 논문, 2019, 174~175쪽.

15) 『邊例集要』 권10, <柴炭> 辛卯 四月.

왜관에는 여러 상점들이 존재했다. 이는 <왜관도>(1783)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소주가(燒酒家)·주방(酒房)·백당가(白糖家)·조포가(造泡家) 등 음식과 관련된 상점들이 초량왜관 동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음식점,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초량 왜관에서 조선인 손님들에게 접대한 과자 중에서 카스테라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림 1> <왜관도>(1783) 中 상점가

왜관에서는 조선과 달리 왜관 안에는 연기에 더럽혀진 자취가 없었는데, 주로 숯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¹⁷⁾ 즉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왜관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사용했으며, 땔나무와 숯 중에서 숯이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수공업용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차(茶)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완(茶碗)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¹⁸⁾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다완

16)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65, 『蜻蛉國志』 2, <物産>. “가수저라(加須底羅)는 정한 밑가루 한 되와 백설탕 두 근을 달걀 8개로 반죽, 구리 냄비에 담아 숯불로 색이 노랑도록 익히되, 대바늘로 구멍을 뚫어 불기운이 속까지 들어가게 하여 만들어 잘라 먹는데, 이것이 가장 상품이다.”

17) 주9)와 동일.

18)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237쪽.

수입이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가 국교재개 직후부터 대마도에서는 다완의 구무(求貿)를 행하면서 왜관 내에서 직접 만들고자 했다.¹⁹⁾ 다완을 제작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왜관에 왜관요[부산요]²⁰⁾가 건설되었다.

왜관요는 초량왜관으로 1678년에 이전한 뒤 1717년까지 대마번에 의해 운영되었고, 1718년에서 1743년까지 대마번의 초닌(町人)에게 이가마를 운영할 권리가 넘어가게 되었다. 대마번에서 도공이 파견되었는데, 단순히 다완을 만드는 일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제작 전반에 관한 일을 진두지휘했다.²¹⁾

왜관요가 설치되면서 장인, 백토, 땀감 등을 구해 관내에서 번조하길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²²⁾ 왜관요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태토는 모두 조선에서 왜관으로 보내 다완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²³⁾ 조선은 이러한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대마번은 일본 도공과 조선 도공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도토 및 땀감을 구하는 데에 돈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토와 땀감은 조선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백자 1500입을 생산하는데 약 50점의 장작이 소요된다.²⁵⁾ 1687년에 왜관

19) 이승민, 위의 논문, 2017, 237쪽.

20) 현재 학계에서는 ‘왜관요’ 대신 ‘부산요’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사카와 노리타카인데, 이후 이 이름이 굳어지게 되면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부산요로 불리고 있는데,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이승민, 위의 논문, 247쪽).

21) 이승민, 위의 논문, 2017, 249쪽.

2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왜인 구청등록(V)』 1698년 8월 29일, 경상감사 이언기가 8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23) 번조차왜가 오면 조선에서는 도토, 땀나무를 제공하는 등 도공을 지원해 주었다(泉澄一, 『江戸時代の日朝交流上』, 『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紀要』 12, 1980).

24)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212쪽.

25) 권병초,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요에서 사용된 땔감 30짐으로 거의 1000입 정도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⁶⁾ 즉 왜관에서는 난방과 취사 외에도 수공업용으로 땔감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00년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은 갖은 이유로 왜관요를 열어주지 않으려 했다. 이에 따라 왜관요로 들어가는 도토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면서 가마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1743년까지 운영되다가 폐요하게 되었다. 1743년을 끝으로 대마번에서 소용되던 주문자기를 제작하던 왜관요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왜관요가 폐요할 때까지 조선은 왜관요에 사용되는 연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조선으로부터 연료 지급 방법

1. 지급 대상

왜관은 조선에 있었지만, 조선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왜관을 이용하는 일본인들은 왜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했으며, 왜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간혹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조시(朝市)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연료의 경우, 왜관 안에서 땔나무와 숯을 구하기에는 한정이었으며, 구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다. 왜관 주변에 산이 있었지만, 왜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양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조선에 연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조선은 왜관을 이용하거나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땔나무와 숯[柴炭]을 지급하게 되었다.

왜관을 이용하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연료인 시탄에 대해서는 『증

26)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234쪽.

정교린지』 <柴炭支給>으로 정리되었다.

왜인에게 지급하는 땔나무와 숯은 경상 좌·우도의 각 진으로 하여금 땔나무를 베고, 숯을 캐어 부산진에게 수납하게 하고, 부산진을 이를 받아 왜인들에게 지급했다.²⁷⁾

이 사료만으로는 시탄을 지급받는 일본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왜관에 들어오는 일본인과, 왜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에게 시탄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탄을 지급받는 일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료는 1612년부터 등장한다. 1612년 전관매매(專管買賣)²⁸⁾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왜관에 남아 있었는데, 이때 요미(料米)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시탄은 지급했다²⁹⁾고 한다. 1641년에도 대관에게 시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⁰⁾ 1683년 시탄을 지급받는 일본인들의 직책이 등장하는데, 송사왜·대관왜·금도왜에게 매일 시탄을 경중(輕重)에 따라 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³¹⁾ 이들뿐만 아니라 재관왜³²⁾, 연례송사와 별차왜에게도 시탄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끝나거나 상선연(上船宴)이 지난 연례송사와 별차왜에게는 시탄을 지급하지 않았다.³³⁾

그런데 시탄을 지급하는 양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 1711년 연례송사에 대해서는 인원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대관왜·금도왜·통

27) 『增正交隣志』 제4권, <柴炭支給>.

28) 『邊例集要』 제1권 <別差倭>. “신해년(1611) 2월, 두왜 전우위문(傳右衛門), 충우위(忠右衛), 유우위문(有右衛門) 등 3명의 왜인이 매매(賣買)를 전담하는 문제로 나왔다고 장계하였다.”

29) 『邊例集要』 권10, <柴炭>, 壬子(1612) 三月.

30) 『論賞賜米膳錄』(奎129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책, 辛巳 五月初五日.

31) 『邊例集要』 권10, <柴炭>, 癸亥(1611) 六月.

32) 『邊例集要』 권10, <柴炭>, 戊戌(1688) 六月.

33) 『邊例集要』 권10, <柴炭>, 辛巳(1701) 十二月.

사왜 · 서승왜 · 대소차왜는 정해진 인원 · 기간 없이 들어왔으며, 이들이 배에서 내린 다음부터 시탄을 지급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지급해야하는 시탄의 양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시탄 양에 대한 절목³⁴⁾이 만들어졌다. 관수 · 정관 · 일대관은 매일 매 사람마다 숯 1석, 선주는 매명 11두, 진상압물은 매명 6두, 금도왜 · 통사왜 · 서승왜 · 의왜는 3두씩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하였다.³⁵⁾

1716년 부산편비(釜山編裨)가 일본인들에게 곤육을 당하고 탄고(炭庫) 자물쇠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다.³⁶⁾ 일본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시탄의 석수(石數)가 완전하지 않았으며, 잇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절목에는 차왜에게 지급하는 탄가만 마련되어 있었고, 별차왜에게 시탄을 지급하는 것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원인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례차왜에게는 지급한 숯 외에 추가로 참작(參酌)하여 지급하고, 시탄을 지급받지 못했던 별차왜에게도 시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은 왜관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만큼 시탄을 지급하고자 했다. 1721년 일본에서 조선의 약재를 조사하기 위해 약재질정관(藥材質正官)을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약재질정관에게 지급하는 시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1630년에 정해진 한도 외에는 시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에, 약재질정관에게 줄 수 있는 시탄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하는데

34) 이때 정해진 절목의 내용은 알 수 없음.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邊例集要』 권10 <柴炭>에 신묘년 자료를 177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신묘년은 이정신이 동래부사일 때의 1711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36) 『邊例集要』 권10, <柴炭>, 丙申(1716) 十二月.

연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역관이 부산진에 시탄을 요청하였고, 약 재질정관에게 도선주 격으로 1개월에 숯 18섬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³⁷⁾

이렇게 계속해서 정해진 것 외에도 시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1726년에 직책별로 시탄 지급량을 정하게 되었다.

<표 1> 1726년 『증정교린지』에 나타난 시탄 지급

직책	지급량	횟수
관수, 정관, 부관, 일대관	숯 1섬, 땔나무 10속	매일 지급
도두금도	숯 9말, 땔나무 9속	
선주	숯 9말, 땔나무 6속	
봉진압물	숯 6말, 땔나무 5속	
대관 · 서승 · 통사 · 금도 · 의왜 · 사복압물 · 시봉 · 서기	숯 3말, 땔나무 3속	

1726년 12월 왜인 3명이 시탄을 지급받지 못해서 훈도 · 별차와 다투는 일이 생겼다. 1701년에 상선 후에는 시탄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는데, 이 규정이 왜인들의 불만이었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시탄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므로, 한도 외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대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차왜에게도 시탄을 지급하고자했다.³⁸⁾ 그리고 관수왜부터 지급량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표 1>에는 없지만 왜관 수리를 위해 차왜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장수들이 왜관에 머물렀을 때에도 시탄을 지급하고자 했다.³⁹⁾

이후 1791년 시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수정되었는데, 다음 <표 2>와

37) 『藥材質正紀社』(국사편찬위원회 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 5) 권4, 교호 6년(1721) 7월 15일.

38) 『邊例集要』 권10, <柴炭>, 丙午(1726) 十二月. “至於柴炭 便同水火相資”

39) 주 27)과 동일.

같다. <표 2>를 보면 1726년 이후 1791년 시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수정되기 전에 일부 직책의 시탄 지급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791년 『증정교린지』에 나타난 시탄 지급

직책	원래 지급 규정	바뀐 지급 규정
감동을 담당한 두왜	숯 20섬, 땔나무 200속	숯 12섬, 땔나무 120속
별금도왜, 중금도왜	숯 13섬, 땔나무 130속	숯 6섬, 땔나무 60속
통사왜	숯 12섬, 땔나무 120속	숯 5섬, 땔나무 50속
서기왜	숯 12섬, 땔나무 120속	숯 6섬, 땔나무 60속
소금도왜	숯 9섬, 땔나무 90속	숯 4섬, 땔나무 40속
기계를 담당한 왜, 진흙장인왜, 사환왜, 목수왜 12명, 인거왜 6명	숯 4섬, 땔나무 40속	숯 2섬, 땔나무 20속
감역청	숯 2섬	숯 1섬

하지만 1791년에는 통사왜 · 서기왜 · 기계담당 · 진흙 장인 · 목수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땔나무 1630속 중 820속을 감하고, 숯은 166섬 중 84섬을 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1791년에 왜인들에게 지급하는 시탄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증정교린지』에는 “감동역관(監董譯官) 김건서(金健瑞)가 두왜(頭倭)를 꾸짖고 타일러 그 절반을 감하고서 약표(約標)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¹⁾ 감동역관은 왜관 수리의 집행자로 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지급과 역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수리 비용의 조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⁴²⁾ 1791년 감동역관이었던 김건서는 왜관 수리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직접 마련하였는데⁴³⁾, 아마

40) 주 27)과 동일.

41) 주 27)과 동일.

42) 장순준,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9쪽.

43) 『備邊司謄錄』 정조 11년(1787) 9월 10일.

도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탄 지급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영남읍지』에서 왜관을 이용하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시탄에 대해서 ‘항류왜일삭소급시탄식(恒留倭一朔所給柴炭式)’, ‘연례송사와 일삭소급시탄식(年例送使倭一朔所給柴炭式)’, ‘별차왜일삭소급시탄식(別差倭一朔所給柴炭式)’으로 구분해서 정리되었다.⁴⁴⁾ 각각 직책과 인원마다 지급하는 땔나무와 숯의 양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시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왜관에 지급된 시탄의 총량 중 숯은 1710년에는 1만 2천 2백 90석⁴⁵⁾, 1711년에는 1만 7천 여석에 달했다.⁴⁶⁾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지급하는 직책이 늘어나거나, 차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왜관에 들어오는⁴⁷⁾ 등의 이유로 지급량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1783년에 제정된 『왜인지급시탄절목』⁴⁸⁾에는 1년에 숯 7,250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711년과 거의 약 1만 석 가량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왜관에 들어오는 인원 감소 등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⁴⁹⁾ 그러나 만약 부족한 양이 발생하면 부산진에서 구입해서 지급

44) 『嶺南邑誌』(奎1217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책, 『釜山鎮鎮誌』 <工庫>.

45) 『邊例集要』 권10, <柴炭>, 辛卯 四月.

46) 주 45)와 동일.

47)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송환할 때 표차왜와 함께 귀국 함.

48) 『倭人支給柴炭節目(給倭柴炭掾弊節目)』(奎1810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절목이 작성된 것은 ‘계묘(癸卯) 3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에는 이를 1843년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양홍숙은 이에 대해 절목의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의 수결이 1843년에는 일치하지 않고, 1783년에 두 사람의 성이 각각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절목의 제정 연도를 정조 7년(1783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성일도 자료의 작성 연도를 1783년으로 보았다.(정성일, 앞의 논문, 2019, 주6) 참조. 필자 또한 양홍숙과 정성일의 견해에 따라 1783년으로 보고자 한다.

49) 정성일은 1783년 연료의 양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선 정부의

하도록 했다.

조선은 왜인들에게 시탄을 매일 지급하고자 했다. 『화관사고(和館事考)』에는 왜관 안에서 지켜야할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④ 숯과 섶은 날마다 왜관 안으로 들여보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시탄을 매일 지급하도록 했다.⁵⁰⁾ 이는 두모포왜관 시기 때 정해진 규정인데, 1683년에 매일 시탄을 경중(輕重)에 따라 정식으로 지급하는 규정⁵¹⁾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초량왜관 시기에도 매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가 들어온 날부터 나간 날까지 날마다 들여보내는 것이 선례였으며, 매일매일 지급하는 양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때 5일마다 주는 잡물과 함께 지급하였다.⁵²⁾

시탄 지급량과 관련해서 동래부사와 각 읍의 수령과 부산첨사가 모두 장계를 올려 적당량을 논의하여 분담하도록 하였고, 부산첨사는 땔나무와 숯의 지급을 맡았다.⁵³⁾⁵⁴⁾ 시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 기준을 넘기거나, 시탄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에 부산첨사와 관리들에게 죄를 물었다. 1730년 부산첨사가 시탄을 때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시기를 어기는 경우가 많으니 조정에서는 시탄을 담당하는 부산첨사에게 각별히 신칙하라고 분부했다.⁵⁵⁾ 이후 1732년⁵⁶⁾, 1734년⁵⁷⁾, 1737년⁵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일본 측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대응하였는지 양국 자료를 대조하면서 그 과정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정성일, 앞의 논문, 2019, 182쪽).

50) 정성일, 앞의 논문, 2019, 179쪽.

51) 『邊例集要』 권10, <柴炭>, 癸亥 六月.

52) 권상일, 『淸臺日記』 下, 1737년 8월 8일.

53) 『增正交隣志』 제3권 <다례의>.

54) 『備邊司謄錄』 영조 10년(1734) 7월 5일.

55) 『承政院日記』 영조 6년(1730) 11월 壬午.

56) 『備邊司謄錄』 영조 8년(1732) 9월 4일. “땔감도 진작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는 부산첨사의 소관이니 첨사를 특별히 뽑아서 각별히 신칙한다. 땔감 등 물건을 만약 진작에 주지 않으면 공작미의 예에 따라 형벌에 처한다.”

57) 『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8월 己酉. “부산의 시탄도 첨사를 신칙하여 이전과

도 부산진에게 시탄 지급에 대해서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여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부산진첨사에게 각별히 신칙하라고 당부한 이유는 시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난출(闌出)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36년(영조 12)에 왜관의 일본인이 숲을 날마다 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관문을 나온 사건이 있었다.⁵⁹⁾ 이 사건으로 부산첨사는 곤장 50대를 맞았고, 동래의 겸관·훈도·별차·역관에게 모두 죄를 물었다. 1737년에도 영조는 왜관에 시탄을 지급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명하였고, 수령과 첨사들에게 경중을 나누어 경고하였다. 이후 1783년에는 부산첨사가 시탄을 지급하는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오죄(贓汚罪)로 논죄하도록 하였다.⁶⁰⁾

1786년 왜관의 일본인들에 의해 초량리 주민인 추응덕(秋應德)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인들이 난동을 일으킨 것은 바로 5일분의 땔나무와 숲을 지급할 기일을 넘기고 지연시킨 것이 원인이었다.⁶¹⁾ 조정에서는 땔나무와 숲의 지급 기일을 어겼다는 죄로 부산진첨사를 귀양 보냈다.⁶²⁾

시탄 품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산진첨사에게 죄를 물었다. 1750년에 공작미를 둘러싼 폐단으로 『동래접왜절목(東萊接倭節目)』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시탄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시탄(柴炭)은 부산첨사로 하여금 종전대로 상정군목(詳定軍木)으로 미리 미리 조비(措備)하여 기일 내에 들여주게 하였으나 근래에는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한다.”

58) 『備邊司謄錄』 영조 13년(1737) 11월 7일.

59) 『英祖實錄』 영조 12년(1736) 7월 25일.

60) 『日省錄』 정조 7년(1783) 6월 기사.

61) 『正祖實錄』 정조 10년(1786) 12월 19일.

62) 『增正交隣志』 제4권, <禁條>.

들여 줄 시탄을 전연 마음을 쓰지 않아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고 심지어 해상(海上)의 노천(露天)에다 두어 눈과 비에 젖은 바가 되어 왜인들이 다시 말려서 써야만 비로소 불이 붙는다 하니 국가의 기강에 관계된 만큼 참으로 극히 한심하다 하겠다.⁶³⁾

위 사료를 통해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을 부산진에서 관리했으므로, 부산진 첨사가 직접 검사하여 땔나무는 반드시 좋고 쓸 만한 것으로 가리고, 숲은 특별히 생목(生木)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노상에 놓지 않고 집을 지어 비에 젖지 않게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부산첨사에게 ‘종신 금고율’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렇게 부산진 첨사를 처벌했던 것은 시탄을 지급하는 시기를 어기지 않고, 시탄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어서 왜인들이 왜관에서 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난출이 발생하면 추웁덕 살인사건과 같이 왜관 주변민까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809년 대마도와의 폐단을 이정하는 약조를 맺게 되었는데, 가식자(家食者)들이 멋대로 탄막(炭幕)으로 나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⁶⁴⁾

이처럼 조선은 왜관에 상주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에서 왜관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에게 시탄을 지급하려고 노력했으며, 지급기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료지급과 관련하여 일본인과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 부산진첨사에게 죄를 물었고, 부산진첨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각별히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3) 『備邊司謄錄』 영조 26년(1750) 5월 16일.

64) 『純祖實錄』 순조 9년(1809) 11월 15일.

2. 지급 방법

다음사료는 1734년에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 시탄에 있어서는 부산에 전속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조정에서는 炭封山을 梁山 등지에 떼어주고 또 炭軍에게서 배를 거두는 법도 있어 그 배로 產地에서 사다가 기한 안에 준비하여 제때에 들여보내 주도록 하고 있으나 …⁶⁵⁾

이 사료를 통해서 주로 봉산을 이용하거나, 탄포(炭布)를 받아서 시탄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시탄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도 왜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용하거나, 왜인들이 조시(朝市)를 통해서 시탄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했다. 여기서는 봉산과 시탄 가포를 통한 시탄 지급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봉산(封山)을 통한 지급

부산진의 봉산으로는 양산(梁山) 내포(內浦)가 있다. 조선은 부산진의 탄봉산으로 양산을 절급(折給)해주고, 이곳을 매탄처(埋炭處 : 숯을 굽는 곳)로 삼도록 했다.⁶⁶⁾ 내포 탄봉산에서 얻은 숯의 대부분을 왜관에 지급하였다.⁶⁷⁾⁶⁸⁾ 탄봉산에서 왜관으로 숯을 운송할 때에는 주로 탄선(炭船)을 이용했다.⁶⁹⁾ 탄선으로 숯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산진 지역민들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격가(格價)를 포로 대신 받고 숯

65) 『備邊司謄錄』 영조 10년(1734) 7월 5일.

66) 『備邊司謄錄』 영조 10년(1734) 7월 5일.

67) 『承政院日記』 헌종 8년(1842) 9월 경술.

68) 『漂人領來差倭謄錄』(奎12954-v.1-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책, 1722년 5월 28일, “本鎮倭人所給炭埋置於梁山內浦”

69) 『漂人領來差倭謄錄』 16책, 1733년 4월 4일, “釜山炭船良中沙工劉儉夫里等七名”

을 실어 왜관으로 운송하였다.⁷⁰⁾ 부산진 선창에서 출발해서 양산 탄소로 이동하였고, 숯을 실어 다시 부산진으로 왔다. 내포는 봉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해야했는데, 부산진과 탄봉산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직(監直)을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⁷¹⁾

부산진은 내포뿐만 아니라 화제리에 있는 화제탄봉산을 매탄처로 사용했다. 『표인영래등록』에는 부산진에서 출발하여 일본인에게 지급할 숯을



<그림 2> <여지도> 양산군

운반하기 위해 양산 화제리 매탄처로 가다가 표류한 기록이 남아 있다.⁷²⁾ 이를 통해 화제리 탄봉산도 일본인에게 숯을 지급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산의 탄봉산에서 숯을 공급했다면, 땔나무는 절영도에서 공급했다.

절영도 동남쪽에 섬 하나가 있으니 절영도라 하는 섬이다. 바다가 운데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된 곳이 없다. 모두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노닐고 구경한다. 섬에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울창하므로 부산참사가 보호해서 왜관 땔감으로 공급한다.⁷³⁾

절영도의 땔나무는 주로 왜관에 지급하였다. 부산진에서 절영도 봉산을 관리하고 또 봉산에서 채취하는 왜관 납입용 땔나무도 부산진에서

70) 『漂人領來差倭謄錄』 16책, 1733년 4월 4일. “倭人所給炭載運次格價代布”

7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부산진지』, 1996, 136쪽. “탄봉산감직(炭封山監直)에게는 달마다 40냥씩을 준다.”

72) 『漂人領來差倭謄錄』 16책, 1733년 4월 4일.

73) 국역 『노상추일기』 1-3, 1782년 4월 10일.

관리한다는 것은 왜관 일본인에게도 익히 알려진 사안이었다.⁷⁴⁾ 18세기 후반에 왜관에 있었던 대마도 통역관인 오다 이쿠고로의 『초량화집』에도 조선 측에서 왜관에 지급하는 땔나무에 대해 ‘柴는 木ノ島에서 벌목해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⁷⁵⁾ 즉 절영도에서 채취되는 땔나무는 대부분 왜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⁶⁾

2) 시탄가포(柴炭價布)를 통한 지급

왜관에 지급하는 연료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봉산뿐만 아니라 탄군(炭軍)에게 배(布)를 거두어서 산지에서 시탄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 경상 좌·우도의 각 진으로 하여금 땔나무를 베고, 솥을 캐어 부산진에게 수납하게 하고, 부산진은 이를 받아 왜관에 지급했다.⁷⁷⁾ 당시에는 온 산에 수목에 무성하여 직접 땔나무를 베고, 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⁷⁸⁾

그러나 점점 산에 수목이 없어지면서 시탄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고⁷⁹⁾, 1629년에는 경상 좌·우도 변장들이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을 마련하느라 전선(戰船)을 마련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⁸⁰⁾ 그래서 1630년에 각 진과 포의 방군가포(防軍價布) 가운데 매년 73동 30필을 부산진에 지급해서 시탄을 마련하도록 했다.⁸¹⁾ 정리하

74) 양홍숙, 「조선후기 영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관의 조성」, 『한국민족문화』 57, 2015, 13쪽.

75) 주 74)와 동일.

76) 절영도에서 채취되는 땔감은 왜관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표인영래등록』 1726년 11월 14일. 양산에서 배를 임대하여 절영도에서 땔감을 채취 후 귀환하던 중 대마도로 표류)

77) 주 27)과 동일.

78) 『論賞賜米贍錄』 1책, 庚子 十一月 二十日. “庚子年分除出柴炭軍使其本鎮句管而其時段炭材與柴木近境諸處遍山樹密是乎等以無弊支過爲如乎”

79) 주 78)과 동일. “樹木有限生齒白繁樵木者甚多故諸山大野日漸樵凡柴木新反埋炭之材絶無而僅有

80)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7월 경인.

먼 처음에는 부산진에서 땔나무와 숯을 직접 받아서 왜관에 지급했지만, 이후 땔나무와 숯을 직접 구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가포를 받아 부산진에서 시탄을 구매해서 지급했던 것이다.

시탄가포의 양은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71년 『영남읍지』에 기록될 때까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시탄가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7~19세기 연도별 시탄가포의 양

연도	1630년	1726년	1787년 9월 30일	1787년 10월 3일	1789년 8월 29일	1789년 10월 29일	1871년
시탄가포 (목면)	73동 30필	72동	75동	72동 30필	70동	70여 동	73동 23필 9척
출전	『증경교 린지』	『변례 집요』	『日省錄』	『日省錄』	『備邊司 臚錄』	『日省錄』	『영남 읍지』

1630년부터 1871년까지 약 70~75동의 목면을 시탄가포로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면 약 70여동을 부산진에 획득한 후에 왜관에 채류하는 일본인들에게 시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목면 70여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영남읍지』의 「부산진사례」⁸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무포 등으로 거둔 세금에서 선무포 청획부비(淸劃浮費) 300냥, 수영납(水營納) 교초가(郊草價) 및 도훈도(都訓導)에 출급하는 20냥, 전병선(戰兵船) 연훈목가(烟燠木價) 21냥, 선무포 수래태가(受來駄價) 163냥을 빼고, 18냥은 해색모채(該色筆債)의 예대로 한 나머지 6,824냥 2전을 부산진으로 운송했다.

81) 주 27)과 동일.

82) 『嶺南邑誌』(奎1217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책, 「釜山鎮事例」 <兵庫>.

<표 4> 『영남읍지』에서 나타나는 목면 70여동의 마련 방법

항목(工庫)		총 합
선무포(選武布) : 45동 45필(4,590냥)		73동 23필 8척 (7,346냥 4전)
탄고포(炭雇布) : 17동 14필(1,728냥)		
탄장포(炭匠布) : 3동 30필(360냥)		
탄사포(炭射布) : 5동 14필(538냥)		
선무포 부비(浮費) : 33필 4척 8촌(66냥 2전 4푼)	兵庫에서 가져옴	
선무포 태가(駄價) : 19필(18냥)		
해척조(解尺條) : 28필 3척 2촌(56냥 1전 6푼)		

시탄가포를 12달로 배분하였는데 이 때 큰달과 작은달을 논하지 않았다고 한다. 큰달에는 620냥 4전으로, 여기서 53냥 2전 4푼은 별도로 포를 분급하고⁸³⁾, 567냥 1전 6푼으로 왜관에 지급할 시탄을 마련하였다. 작은달에는 517냥을 큰달과 마찬가지로 53냥 2전 4푼을 별도로 포를 분급하고, 463냥 7전 6푼으로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산진은 매번 시탄가포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탄을 지급하는 인원이 정해져있는데, 중간에 별차왜에 게도 지급해야하는 규정들이 새로 생기면서 시탄가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관들의 포흠(逋欠)으로 인해 온전한 솟 1섬이 아니라 솟 1섬을 다시 분석(分石)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787년에 사군목(射軍木) 가운데서 35동을 덜어 부산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⁸⁴⁾ 하지만 조정에서는 사군목에서 지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지급하도록

83) 행수군관 1인 2냥, 병방군관 1인 2냥, 지급감관 1인 8냥, 공방색 2인 3냥 9전 6푼, 수문장 1인 1냥 8전, 영선감관 1인 1냥 8전 8푼, 이방 1인 2냥, 회계색 2인 2냥, 지급색 1인 8냥, 탄파장 1인 3냥 6전, 입급군 5명 18냥.

84) 『日省錄』 정조 11년(1787) 9월 갑오.

했다. 사군목 지급 논의에서 대마도의 형세가 가난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대마도에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탄의 수량이 전에 비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년 뒤 1789년 다시 시탄가포의 추가 요청이 있었다.⁸⁵⁾ 부산진은 왜인들의 시탄을 마련하는데 70여동으로는 부족하여 솥을 분석하여 지급하고자 했는데, 왜인들이 이를 알고 점퇴(點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다. 왜관으로 들어오는 차왜의 인원이 계속 증가하였고, 왜인들의 간교한 습성이 예전보다 더욱더 심해져 부산진에서 전례대로 시행하기 어려워 솥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임역(任譯)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탄가 400여냥을 대신 맡게 되었다. 왜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임역들은 왜인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자비로 매달 40냥씩 추가 입금하였던 것이다.⁸⁶⁾

동래부에서는 임역이 시탄가를 대신 맡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모두 부산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제창에 갚아야하는 삼전조(三錢條)⁸⁷⁾ 중에서 4백 냡을 정식으로 부산진에 획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⁸⁸⁾ 조정에서는 매년 4백 냡을 떼어주는 것은 민망하지만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시탄가포로 솥을 마련하여 왜관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인지급시탄절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3>이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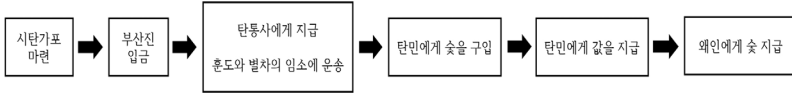
85) 『備邊司謄錄』 정조 13년(1789) 8월 29일.

86) 주 85)와 동일.

87) 1785년 왜관 서쪽 행랑이 불에 타자 왜인들 개건해 주기를 청하였고, 이때 제창의 돈을 동래부에 빌려주어서 지어 주도록 하여 제민창(濟民倉)의 돈은 5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게 하였다.(『日省錄』 17정조 9년 4월 7일)

88) 『日省錄』 정조 13년(1789) 10월 29일.

89) 주 48)과 동일. 『倭人支給柴炭節目』(왜인에게 지급하는 시탄에 대한 절목이지만, 솥



<그림 3> 시탄가포를 통해 왜관에 숯을 지급하는 방법

앞의 <표 4>로 마련된 시탄가포를 부산진으로 운송하고, 매달 말에 부산진에서 전령(傳令)이 왜관의 훈도와 별차의 입소(任所)에 곧바로 운송했다. 이때 일시에 지급하면 포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숯 값 10동과 운반 값 8동 35필을 12달로 나누어 한 달에 1동 27필 6척 6촌씩 동전과 목면으로 반반씩 탄통사(炭通事)에게 지급하였다. 훈도와 별차의 입소에 운송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여 동래부와 부산진에 보내도록 하였다.

에 대한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음)

- 숯을 구입 때 원래 정해진 가격은 1필에 숯 7석 반이지만, 잠시 14석 반으로 숯을 구입하되, 숯을 구입하는 등의 절차는 전적으로 감색에게 맡긴다. 숯을 사고 가격을 지급할 때 탄민과 감색, 통사 등을 불러 모두 다짐을 받고 14석 반으로 출급할 때 입회해서 숯을 보관하여 원가에 대해서 농간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 매년 숯을 구입 목면이 10동인데, 1동 725석으로 값을 정해서 지급하고, 10동으로 사는 합이 7,250석인데, 운반 값 8동 35필을 함께 지급한다.
- 18동 35필을 일시에 지급하면 포흠과 같은 범죄가 지속될 수 있으니 12달로 나누어 한 달에 1동 27필 6척 6촌씩 동전과 목면을 반반씩 지급한다. 매달 월말에 부산진에서 전령이 훈도와 별차의 입소에 운송해서 날마다 기록한다.
- 18동 35필을 통사에게 지급하는데 송의 수가 거칠거나 길이가 짧은 순목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9동 17필은 목면으로 지급하고, 9동 17필 반은 동전으로 대신하는데, 한 필에 2냥씩 계산해서 지급한다.
- 매달 월말에 동전과 목면을 수송한 후에 훈도와 별차는 봉수할 뜻은 수에 따라 동래부와 부산진에 수분하여 보내되, 만약 조그마한 돈이나 목면을 누락해서 수송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일일이 본부에 죄를 청하여 처벌하는 터전으로 삼도록 한다.
- 10동으로 구입한 숯 7,250석을 매달 나누어서 쓰게 하고, 부족한 수는 부산진으로부터 전례에 따라 사서 보관하여 다음에 운반하고 지급한다.
- 지급 구입일 뿐이니(임시방편일 뿐이니)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영문은 질목에 있어서 그 사이에 조종하는 것 같음이 있으면, 즉시 동래부가 해당 감색을 잡아서 다스린 후에 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고자 한다.

그 다음 탄민(炭民)에게 숯을 구입했다. 탄민에게 숯을 구입하고 숯 값을 지급할 때 감색들이 농간(弄奸)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탄민과 감색, 통사들이 입회한 다음 숯 값을 지급하고 매탄(埋炭)하도록 했다. 그리고 매일 일본인에게 숯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숯을 파는 탄민들은 왜관 근처 지역민들로 추측할 수 있다. 70여 동의 시탄가포 값이 조금씩 변함이 있던 것과 같이 시탄을 구매하는 양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 5> 시탄가포 1필 당 숯과 땔나무의 거래량의 변화

연도(년)	1630	1726	1783	1786
1필 당 숯	7석 7말 5되	8석	14석 반	14석 반
1필 당 땔나무	150속	150속	(알 수 없음)	350속
출전	『증정교린지』	『변례집요』	『왜인지급시탄절목』	『日省錄』

1630년 시탄가포 1필당 숯과 땔나무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는데, 이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인지급시탄절목』이 정해지기 전까지 조정에서 정한 정식 규정으로 숯을 구입해야했지만, 부산진에서는 정식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1726년의 경우 1필로 땔나무 150속과 숯 8석을 구입하는 것이 정식규정이었지만, 부산진에서는 1필에 땔나무 300속과 숯 16석으로 구매했다.⁹⁰⁾ 숯 1필 값이 1냥에 미치지 못하고 공급하는 숯의 섬의 숫자가 감소되지 않아 숯을 파는 사람들이 반섬으로 1섬을 만드는 일도 빈번했다.⁹¹⁾ 1783년에도 1필 당 숯 7석 반을 구입해야했지만, 부산진에서는 14석 반으로 구매했다.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83년에 『왜인지급시

90) 『邊例集要』 권10 <柴炭>, 丙午 十二月.

91) 『備邊司謄錄』 영조 5년(1729) 1월 17일.

탄절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원래 숯을 거래할 때 정해진 가격이 1필에 7석 반이었는데, 점점 숯을 받는 왜인들이 증가하여 1필에 14석 반으로 숯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잘못된 규정이지만, 부산진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필에 숯 14석 반으로 숯을 구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시탄가포 70여 동 중에서 10동으로 숯을 구입하고, 8동 35필로 숯을 운반하도록 했다.

탄민에게서 구입한 시탄을 왜관 안으로 운반해야 했는데, 운반을 맡은 일꾼들도 존재했다. 땔나무와 숯을 운반하는 일꾼(負持軍⁹²⁾)은 부산진에서 낙패(烙牌)를 주어 설문장(設門將)이 패를 가졌는지 아닌지 검사한다. 그 다음 왜관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뒤에 기한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자는 이름을 적어 보고하고, 날마다 들어가는 나무꾼, 숯꾼의 성명은 설문에서 적어서 동래부에 보고했다.⁹³⁾

왜관에 들어온 시탄은 시탄고(柴炭庫)라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시탄고는 탄소옥(炭小屋) 또는 영전(營纏), 탄막(炭幕)이라고 부르는데, 왜관의 북쪽 영전(營纏) 고개 너머 기석(碁石) 해안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규모는 대청 3칸, 동·서 창고 각 5칸의 크기였고, 부산 첨사가 관할하였다. 땔나무와 숯을 시탄고에 저장한 후 필요한 만큼 지급하였다.



<그림 4> <왜관도> 中 시탄고

92) 『增正交隣志』 3권 <各項料布式>에는 왜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한(柴漢) 2명’이 있었다. 이들은 봄과 여름에 시마목고초(柴馬木藁草)의 값으로 18냥 3전 6푼을, 가을 겨울에는 20냥 4푼을 합하여 38냥 4전을 동래부사가 지급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 6개월의 생초(生草)는 부산진에서 예초군(刈草軍)을 정하여 보냈다. 이때 시한과 시탄을 운반하는 일꾼이 같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시탄을 운반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93) 『增正交隣志』 4권, <禁條>.

3) 그 외 방법

왜관 측이 연료 공급을 조선 측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 조달하기도 했다. 대마도에서 연료로 쓸 시탄 등을 날랐던 수목선(水木船)의 내용이 일본 측이 작성한 왜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⁹⁴⁾ 그리고 일본인들이 절영도까지 나가서 나무를 베어온 사실⁹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왜관 밖에서 시탄을 조달했던 경우 외에도 왜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탄을 채취해서 사용했다. 용두산이나 용미산에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 쓰러진 소나무, 뿌리가 쓰러진 소나무, 썩은 소나무 등을 찾아서,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연료나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였다.⁹⁶⁾

그리고 시장에서 시탄을 구매하기도 했다. 왜관의 일본인은 개시와 조시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조시는 수문 밖에서 열렸고, 주로 아침/오전에 열리는 시장이었다. 지역민들이 수문 밖에서 일본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때 일본인들에게 땔나무와 숯을 팔기도 하였다.

『번례집요』의 <禁條>의 조목에는 조시에서 시탄을 팔았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신구(新舊) 초량에 사는 백성들이 왜인들에게 땔나무를 팔기 위해 설문 및 왜관 서쪽 담장 근처를 출입하고자 했다.⁹⁷⁾ 이에 대한 난잡한 폐단이 있었으므로 출입하는 것을 엄금하고자 했다. 조시를 이용한 땔감 판매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왜관 주변 지역민들이 왜인에게 땔감을 팔았던 것을 알 수 있다.

94) 정성일, 앞의 논문, 2019, 199~203쪽.

95) 이현영, 『日槎集略』 天, 8월 30일, “절영도는 본래 목장(牧場)이었고, 산지가 많은 황무지인데, 왜관 사람이 임의로 골짜기 땔나무를 뜯었으니, 이제는 진을 설치하였으니, 이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96) 정성일, 앞의 논문, 2019, 202쪽.

97) 『邊例集要』 권5, <禁條>.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7~18세기 왜관에서 사용되는 시탄의 지급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부산에 단일왜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조선은 왜관의 왜인들에게 경계를 지으면서 통제하고자 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연료에 대한 값은 조선이 담당하고 이를 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왜관에 상주하는 관수왜부터 차왜까지 시탄을 지급하고자 했으며, 지급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왜관에 지급하기 위한 시탄은 봉산과 시탄가포를 통해 마련하였다. 시탄가포로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석하는 일이 발생하여 『왜인지급시탄절목』을 만들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조선이 지급하는 시탄이 대부분이었지만, 왜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본인들이 절영도까지 나가서 나무를 베어오거나, 대마도에서 연료로 쓸 땀감 등을 날랐던 수목선(水木船)의 내용이 일본 측이 작성한 왜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왜관 주변민들에게 시탄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왜관을 방문하는 왜인들의 증가, 역관들의 포획으로 시탄가포가 부족하여 시탄의 품질이 좋지 않는 것들을 지급하거나 지급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관에서는 생활필수품인 땀감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출을 하거나, 살인사건 일으키는 등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날짜를 어기지 않고, 품질이 나쁜 시탄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조선은 이를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산진첨사를 처벌하여 땀감 지급과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왜관에 지급하는 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83년 조정에서는 탄봉산에서 더 이상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이 없으므로 송금을 침학(侵虐)하는 일에 대해 금단하는 뜻을 통수영에 분부하였다.⁹⁸⁾ 부산에 왜관이 설치된 이후 조선에서는 대가 없이 무상(無償)으로 연료를 지급했지만, 1876년 이후에는 유상(有償) 즉 매매(賣買)로 바뀌었다.⁹⁹⁾ 1883년 사료를 통해서도 더 이상 조선 정부가 일본인에게 시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왜관에 지급하는 연료에 대해서 왜관의 기능이 끝나는 1876년까지 우호적으로 지급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1. 사료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增正交隣志』 『邊例集要』 『論賞賜米謄錄』 『統制營啓錄』 『漂人領來差倭謄錄』 『嶺南邑誌』 『藥材質正紀社』 『館守日記』 『老峯集』 『盧尙樞日記』 『淸臺日記』 『靑莊館全書』 『日槎集略』 『倭人支給柴炭節目』

2. 저서 및 논문

권병초,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엮음, 『왜관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부산진지』, 부산광역시, 1996.

_____, 『왜인구청등록(V)』, 부산광역시, 2008.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8) 『統制營啓錄』(奎1510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권, 고종 20년(1883) 2월 17일.

99) 정성일, 앞의 논문, 2019, 168쪽.

- _____, 『闢出, 조선의 고민과 그 대책』, 『전북사학』 36, 201.
- 김동진, 『15-19세기 한반도 산림의 민간 개방과 숲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3, 2017.
- 김순일 · 정예정, 『초량왜관(草梁倭館)의 창건(創建), 수리(修理) 및 중수(重修)에 관한 연구(研究)』, 『건축역사연구』 10, 2001.
-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2008.
- 양홍숙, 『조선후기 영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관의 조성』, 『한국민족문화』 57, 2015.
-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 장순순,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정성일,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1609-1876)』,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 수급』, 『향도부산』 39, 2020.

| Abstract |

Aspects of fuel consumption and fuel payment methods in
Waegwa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Yeo, Min-Ju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onsumption type of firewood used in Waegwan from the perspective of Joseon, the number of people paid, and the method of payment.

Japanese residents or visitors to Waegwan needed fuel for their daily lives during their stay in Waegwan. Firewood and charcoal were used to cook food and fire in winter. Fuel is used not only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for handicrafts. Joseon wanted to provide it amicably.

It was in 1611 that firewood began to be provided to the Japanese, and From gwansuwae to songsa and chawae entering Waegwan, firewood was provided. As the number of Japanese entering Waegwan increased, Joseon tried to provide fuel to them. However, a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firewood paid, there was a shortage of firewood, and in this situation, Joseon tried to provide coal so that the payment of firewood would not be disrupted.

This payment method was prepared through 封山, 柴炭價布. Joseon provided Bongsan to Busanjin, Naepo and Hwaje-ri in Yangsan, and here, charcoal was loaded and transported to Waegwan for use. The firewood was prepared in Jeolyeongdo. As for how to prepare fuel through 柴炭價布, each team in the left and right provinces of Gyeongsang Province cut down firewood, dug up charcoal, and received it and paid it to the Waegwan. However, the fuel could not be provided in time, so it was paid to Waegwan

through Gapo.

However, in the process of supplying fuel to Waegwan, friction occurred between Waegwan and Joseon. Failure to comply with the fuel payment date resulted in a nanchul(蘭出) and murder. In order to prevent such social problems, the Joseon government continued to add and revise regulations on the fuel payment of Waegwan.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oseon government considered the fuel paid to the Japanese living in Waegwan as important.

Key Words : Waegwan, fuel, 『*List of Japanese-paid fuels*(倭人支給柴炭節目)』, sitangapo, prohibited forest policy for coal.